

보도 일시	2023. 1. 31.(화) 09:00 2023. 1. 31.(화) 석간	배포 일시	2023. 1. 31.(화)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이찬웅 (044-202-8808) 주무관 정상은 (044-202-8809)

## 고용노동부, 기술변화 등을 반영하여 산업현장에 부합하도록 산업안전보건 기준의 현행화 착수

–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1.31.~3.13.)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월 31일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월 13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SPL(주) 끼임 사망사고('22. 10월) 등 산재 발생에 따른 대통령 지시사항과 지난 '22. 11. 30.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등에 따라 방대한 현행 안전보건기준규칙(680여 개 조문)을 위험기계·기구의 활용 상황 등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은 그간 검토한 것을 토대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 기준 정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 분석을 통해 예방 조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등 안전기준을 작업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노후화되어 현장 부적합한 규정의 폐지 등 이를 현행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되 재해예방 역량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선을 병행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 「규제혁신 특별반\*」(차관 권기섭)과 반도체·석유화학 등 개별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등의 법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였다.

\* 규제혁신 특별반: 지난해 5월 발족하여 산업안전, 직업훈련 등 17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 '22년 12월까지 101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75개 과제는 법령개정 등 정상 추진 중

\*\* 반도체 업계 간담회('22.6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협력업체 등),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22.8월 GS칼텍스, S-OIL, LG화학, OCI 등)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낙후된 규제 외에도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의 반영이 필요한 안전보건기준을 계속 발굴하여 현실에 맞게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①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등 안전기준 현행화

먼저, 광주광역시 화정동 붕괴사고('22.1월, 6명 사망), 안성 물류센터 붕괴사고('22.10월, 3명 사망) 등 사고원인 분석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거푸집동바리 관련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을

- 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 ② 불필요한 기준은 삭제하는 한편,
- ③ 핵심 안전기준 중심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에서 안전기준을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현행화한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혼합기 끼임 사고와 관련하여 그간 발생하였던 산재 사고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혼합기 등 사고가 빈발하였던 위험기계에 대한 현행 관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올해 상반기에는 기계의 회전체에 의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 중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고, 혼합기·파쇄기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의 하위법령 추가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 안전기준 현행화

- **(거푸집동바리)** ① 법령 체계는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정비  
<재료 확인 → 조립도 작성 → 조립도 준수 → 조립작업 → 콘크리트 타설>

②-1 현장에서 주(主) 동바리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②-2 현장에서 실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

③ **데크플레이트(강제 갑판) 설치기준은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



\* 거푸집: 콘크리트가 소정의 형상 및 치수를 유지하며 적합한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을 총칭

\*\* 동바리: 건설공사 진행 중 물건 등을 지지하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을 지칭, 거푸집 동바리의 경우 거푸집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의미

- **(고소작업대)** 작업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 정비

\* '22.9.22. 고소작업대에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전도되어 사망

## ② 강관비계 기둥 간격 확장 등 규제 합리화

규제개선 과제로 발굴된 노후화되거나 현장에 맞지 않는 안전기준 등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실제 작업 현실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같이 담고 있다.

공장 내부에서 보수공사 시, 다수의 기계·설비가 설치되어 강관비계의 기둥을 현행 기준상 간격(띠장 방향 1.8m, 장선 방향 1.5m)에 맞게 설치하면 비계\*와 기계·설비 간 간격이 좁거나 부딪히게 되어 기계·설비의 조작이 어려워지거나,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비계를 현행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임시 작업발판 및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

이에, 현장방문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한다면 비계기둥의 간격을 현행보다 확장(최대 2.7m)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합리화한다.

그리고, 현행 규정상 ‘계단의 측면’\*에만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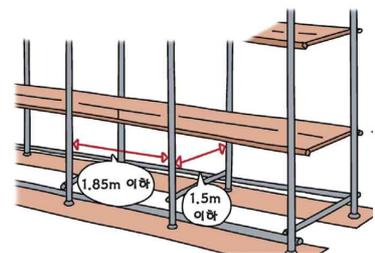
\* 현재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대해서만 난간기둥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 중간 난간대 설치 의무 면제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기타 구조물에 대해서도 난간기둥이 세로 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 난간기둥으로 중간 난간대를 대체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안전기준을 정비한다.

### 규제 합리화

- 안정성에 대한 구조검토 및 조립도를 작성한 경우 현장여건에 맞게 비계 설치 가능

\* 띠장(가로) 방향 1.85m 장선(세로) 방향 1.5m 이하, 일률적 기준 → 구조검토를 통한 안정성 확보의 경우, 띠장·장선 방향 각 2.7m 이하로 설치 가능



-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 안전난간 기둥을 촘촘히 설치한 경우,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 인정

- 비공개승인된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받아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 비공개에 따른 대체자료를 연계 사용 허용

\*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조성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화학물질이 만들어지는 경우 연계 불가

### ③ 안전보건교육 내용 및 시간 합리화

사업장 내 산재예방 핵심인물(Key-man)인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을 일반 근로자 교육과 분리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를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 추가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고려한 안전한 작업방법이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빠짐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관리감독자: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현장의 직장·조장·반장 등이 이에 해당

#### 안전보건교육 개선

#####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 보완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 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 시간 합리화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으로 확대
-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편
- \* 사무직: 분기 3시간 → 반기 6시간, 비사무직: 분기 6시간 → 반기 12시간
-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받은 일용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게되는 경우 해당하는 주의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면제

이정식 장관은 “작년 11월 30일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발표한 내용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점검·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법령 및 기준 등을 정비해 나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라고 하면서,

“현장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현장 적합성 및 작동성을 높여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법령·기준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 시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인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미제출 횟수에 따라 차등\*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정) 1차 위반 300만원 → 2차 위반 600만원 → 3차 위반 1,000만원

\*\* 다만, 위반 횟수가 1회를 초과하기 어려운 건설 현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미제출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같은 과태료 부과

**② 산업안전·보건 지도사 자격증 발급 근거 신설**

☞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4\)](#)

산업안전·보건 지도사에게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보수교육 이수기간 확대 및 안전보건교육 시간 등 합리화**

☞ [산재예방지원과\(044-202-882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직무교육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기간을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하여 직무교육 대상자가 원활하게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주기를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개편하고, 일용근로자가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받은 이후, 동일한 사업장에서 이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경우 해당하는 주(週, 월요일~일요일)의 채용 시(또는 특별) 교육을 면제한다.

보건교육만이 의무인 사업장\*은 정기교육시간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항만 안전특별법 등 별도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이수 시 해당 교육이수 시간을 반영하여 정기교육시간 등에서 면제한다.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혼재되어 있는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과정을 분리하여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 관리감독자의 각 교육내용에 위험성 평가를 추가하며 특히 관리감독자의 교육내용에는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재해발생 시 조치사항을 추가하는 등 안전보건교육 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한다.

## ② 비공개승인된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받아 타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기존 비공개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대체자료를 계속 연계하여 사용 허용

☞ 화학사고예방과(044-202-8966)

현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비공개승인을 받은 화학물질 원료를 공급받아 국내에서 해당 원료를 단순 혼합하여 타 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제조자의 경우만 제한적으로 원료의 비공개승인 결과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혼합 이외 물리적 가공(성형 등)하여 제조하는 경우와 비공개승인을 받은 원료를 국외에서 혼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조된 타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원료의 비공개 승인 결과에 따른 대체자료의 연계를 허용한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 구성성분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대체자료 연계 사용 허용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석면조사 생략 등 확인 신청 면제 및 석면해체·신고 대상 완화

☞ 산업보건기준과(044-202-8871)

석면의 불포함 여부가 사실상 확인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도 석면조사 생략 확인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건축주 등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으나, 석면 사용의 금지가 보편화('17.7.1.)된 이후 착공(신축에 한함) 신고된 건축물에는 해당 확인 절차를 면제한다.

또한, 현재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작업내용 등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이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나, 신고한 작업내용 중 석면함유자재의 종류 및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면제한다.

### ③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① 중간난간대 설치 예외 대상 개선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1)

안전난간 설치 시 난간기둥이 세로방향으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추락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난간대 설치의 예외를 인정한다.

#### ② 강관비계 기둥 간격 등의 기준 합리화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39)

현재 강관비계 기둥 간격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다수의 기계·설비가 설치된 공장 내부 보수공사의 경우, ① 기준을 준수함에 따라 기계·설비의 조작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거나(기둥 간섭), ② 대형 설비의 돌출부로 인해 기준 준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례도 있었다.

\* 띠장방향 1.85m, 장선방향 1.5m 이하

[기계설비 조작 불가 사례]

이에, 현장방문, 전문가 검토를 통해 비계의 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있으면 기둥 간격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최대 2.7m) 기준을 합리화한다.



#### ③ 굴착면의 기울기 안전기준 명확화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현재, 습지 흙, 건지 흙, 풍화암, 연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정하는 굴착면 붕괴예방 기울기 기준에 대하여, 건지와 습지의 구분이 모호하고 건축관계법령과 달리 정하여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렵다는 개선요구가 있었다.

이에, 구분기준을 모래, 흙, 풍화암·연암, 경암으로 정비\*하여 모호한 기준은 삭제하는 한편(건지·습지 → 흙),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기준과도 일치시켰다. \* (모래) 약 29°, (흙) 약 40° (풍화암·연암) 45° (경암) 약 63° 이하

또한, 현장의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기 기준 외에도 지반 붕괴 위험 안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④ 건설공사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 현행화

☞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현재, 거푸집 및 동바리 안전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체계가 복잡하고 용어가 난해하며, 불필요한 내용도 담고 있어 건설공사 종사자도 쉽게 이해할 수 없고, 현장에서 준수하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① 건설현장의 작업순서에 맞춰 법령 체계를 정비하고,

\* ① 재료·구조 → ② 구조검토 및 조립도 작성 → ③ 유형별 안전기준(조립도 준수) → ④ 조립작업 시 추락예방 등 → ⑤ 콘크리트 타설 順

② 시대변화에 따라 이제 건설현장에서 주(主) 동바리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 비계용 강관 등에 대한 세부 안전기준은 삭제하며,

③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자재별 세부 기준은 삭제하고 산업표준에 따른 재료를 사용토록 하여 안전기준을 현행화하는 한편,

최근 대형사고를 유발한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설치기준은 핵심 안전기준\*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한다.

\* 양단 지지물 고정, 접합부 걸침길이 확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

## ⑤ 고소작업대 이동 시 안전 규정 명확화

☞ 산업안전기준과(044-202-8853)

최근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 근로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사망 등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에서는 이동할 수 없도록 한다.

\* '22.9.22. 충남 소재 건설현장에서 고소작업대를 올린 상태로 근로자가 타고 이동 중 장애물에 걸려 고소작업대가 전도되면서 사망사고 발생

담당 부서 <총괄>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양현수 (044-202-8804)
		담당자	사무관	이찬웅 (044-202-8808)
		담당자	주무관	정상은 (044-202-8809)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기준과	책임자	과 장	김진숙 (044-202-8850)
		담당자	사무관	김상중 (044-202-8851)
		담당자	사무관	신정욱 (044-202-8853)
		담당자	사무관	임경희 (044-202-8852)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보건기준과	책임자	과 장	김정연 (044-202-8870)
		담당자	사무관	황규석 (044-202-8871)
<공동>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	책임자	과 장	금정수 (044-202-8920)
		담당자	사무관	최정윤 (044-202-8820)
<공동>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상원 (044-202-8935)
		담당자	주무관	김병석 (044-202-8939)
		담당자	주무관	박승현 (044-202-8940)
<공동>	산재예방감독정책관 화학사고예방과	책임자	과 장	심우섭 (044-202-8965)
		담당자	사무관	안유진 (044-202-8966)